##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34

발의연월일 : 2021. 10. 29.

발 의 자:노웅래·한준호·소병훈

장철민 • 유기홍 • 김진표

양기대・야전비・김병기

김주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만 있으나(법 제6조제1항),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될 때는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법 제4조제3항)를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권고할 수 있음(법 제6조제7항).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에 따른 이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기초단위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여,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시 기초 단위 지자체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요건을 삭제하여 악취실태조

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적 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이를 통한 실효적 악취관리를 도모하고 자 함(안 제6조제7항). 법률 제 호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시·도지사에게"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1년 이내 해당 지역을 악취관 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⑦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	
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	
<u>우에는</u>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	
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	
하여 <u>시·도지사에게</u> 해당 지역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u>
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	<u>장에게</u>
을 권고할 수 있다. <u>이 경우 권</u>	
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1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년 이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
<u>다.</u>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